

# 프랑스 가족수당의 현황과 시사점

The Current State of Family Allowance in France and Its Implication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프랑스 가족수당은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한 1945년 이후부터 프랑스 사회가 직면해온 문제에 대응하면서 발달하여 오늘날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 가족수당제도는 국가가 가족을 지원한다는 의지의 천명으로서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의 자녀 양육과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통합적 수당 체계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합성을 도모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는 프랑스 가족정책을 구현하는 중요 수단인 가족수당의 특징과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수당 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1. 서론

프랑스는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에 달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도 60% 이상으로 높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모범 사례로 여겨진다.<sup>1)</sup> 프랑스가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프랑스에서는 가족정책이 국가 사회보장제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프랑스는 가족을 위한 공공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도에 3.65%로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높다. 그런데 프랑스가 가족정책을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가족수당”이다.

근대적인 모습의 프랑스 가족수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가 국가 주도의 복지국가를

1) OECD(2017).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17. 9. 1. 인출.

건설하면서 시작되었지만, 그 역사적인 근원은 가족을 중시하는 가톨릭교회의 전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가족수당은 가족을 중시하는 프랑스의 고유한 전통을 기본으로 시대별로 요청된 사회적인 이슈를 반영하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프랑스 가족수당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가족수당이 단일한 하나의 수당이 아니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진 다양한 현금 지원 정책들을 가족수당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체계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수당과 유사한 형태로 둘째 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가족수당을 포함하여, 육아 휴직 급여를 수당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보육 지원에 해당하는 가정 보육사 이용 수당도 모두 가족수당 체계 안에 포함된다. 이 뿐만 아니라 한부모, 장애아, 빈곤 가정 등 취약가정에 대한 지원도 가족수당 체계 안에 포함된다.

프랑스의 가족수당제도는 내년부터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출산,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증가 등 2차 인구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 및 사회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프랑스가 가족수당이 어떻게 프랑스의 인구학적 위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가족정책의 목적과 가족수당의 역할

프랑스의 가족수당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가 어떻게 가족정책을 정의하고 있으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하였다시피 프랑스에서 가족수당제도는 가족정책의 목적을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법무 행정 정보국(DI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sup>2)</sup>은 부모의 출산·양육·교육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국가, 지방 및 사회보장기구가 추진하는 정책을 가족정책으로 정의한다.<sup>2)</sup> 코마이유(Commaille) 등은 가족수당이란 가족 부양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수당과 가족 생활과 관련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수당을 포괄하는

2) DILA(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2016). <http://www.vie-publique.fr/decouverte-institutions/protection-sociale/rub1850/>에서 2017. 9. 1. 인출.

것이라고 하였다.<sup>3)</sup> 여기서 가족 부양 수당에는 자녀 부양 수당, 임신·출산 및 영아 양육 수당, 한부모 지원 수당, 장애아 자녀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며, 가족 생활과 관련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수당에는 주거 수당, 성인 장애 수당, 빈곤자 지원 수당 등이 포함된다. 코마이유의 이러한 정의는 다음 절에서 논의 될 프랑스 가족정책의 유형에 잘 나타나 있다.

프랑스 가족정책이 전통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출산지원 정책을 통해 인구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둘째, 출산과 자녀 교육 비용을 지원해 일정 수준의 가족 생활을 보장한다. 이와 더불어 2차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로 프랑스 가족정책은 새로운 목적을 추가하게 된다. 이를테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 자녀를 부모가 양육하면서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한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해 부모 역할을 지원하고 가족 관계와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돕는 것 등이 가족정책의 목적에 추가되었다. 이렇듯 프랑스 가족정책은 새로운 가족과 사회의 욕구에 정책 목적을 맞춰 왔다.

최근 들어 사회 양극화, 빈곤 문제의 심화 그리고 이로 인한 재정 압박으로 인하여 프랑스 가족정책은 수평적인 형평성과 더불어 수직적인 형평성도 지향하게 되었다. 수평적 형평성이라는 것은 자녀를 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간의 생활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고소득 가정과 저소득 가정 간의 수직적 형평성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가구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그동안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면 누구에게나 지급하던 가족수당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 3. 프랑스 가족수당의 발달 과정<sup>4)</sup>

프랑스는 가족수당제도가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 잡기 이전부터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모성을 칭송하고 가족을 지원해 온 역사적인 전통이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사회적 불평등 확산, 이민자 유입, 경제 불황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

3) Commaille J., Strobel P., & Villac M.(2002). La politique de la famille, Paris, La Découverte, collection Repères.

4) 본 절의 내용은 Marc de Montalembert(2004). La protection social en France, Les notice de al documentation Française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면서 가족수당 제도도 수차례의 개혁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프랑스 가족수당의 발달 과정은 ① 19세기 후반~20세기 초, ② 제1차~제2차 세계대전(1930~1945), ③ 1945년~1974년, ④ 1975년~2004년, ⑤ 2004년 이후의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시기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은 프랑스 가족수당 정책이 태동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가톨릭교회가 중심이 되어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현대적인 모습으로서의 가족수당제도는 20세기 이후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 일부 고용주들은 부양가족이 있는 남성 근로자가 부양 의무가 없는 독신자와 동등한 생활 수준을 누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 임금 외 특별 수당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특별 수당은 남성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였다. 이후 고용주가 부담하는 특별 수당 지급 의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몇 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보상 금고가 단계적으로 창립되었다. 이후 1932년 근로자에게 가족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다.

둘째, 1945년부터 1975년까지는 세계대전 종전 이후 프랑스의 경제가 급상승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 프랑스는 전쟁으로 감소된 인구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수당을 창설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국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고용주가 지급하던 특별 수당은 1930년에 가족법이 창설되고 1945년에 사회보장법이 제정됨으로써 철폐되었다. 동시에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되고 지급되는 가족수당 개념이 도입되어 고용주들이 지급하던 특별 수당은 가족 보조금으로 대체되었다. 이때의 가족수당은 직업이 있는 가장에게 가족 부양비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었다.

가족수당이 도입된 초기에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과 미혼자 혹은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1명뿐인 가족 간에 생활 수준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가족수당의 재원은 고용주가 부담한 사회보험료였다. 이때 가족수당은 자녀 수와 자녀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었다. 1967년 ‘홀벌이 수당(allocation de salaire unique)’을 개혁하면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족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후 여섯 차례의 계획 작업을 거쳐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념을 수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972년 1월 3일에 ‘자녀 양육 수당(allocation de frais de garde)’을 마련했다. 이 시기에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하던 수당에는 고아 수당(allocation d'orphelin)과 주거 수당(allocation des handicapés)이 있었다. 이후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1974년에 도입한 개학 수당(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과 1978년에 마련한 한부모 수당(allocation de parent isolé)이 있다.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과 함께 장애인, 한부모, 버려진 가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인 가족수당도 마련하였다.

셋째, 1975년부터 2004년 기간은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어 이러한 문제를 가족수당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또한 경제 불황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그동안 확대했던 다양한 가족수당제도를 조정하고 통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증가에 대응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수당 정책을 도입하였다.

1977년 7월 12일에 지금까지 마련된 수당을 정리하고 단순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일환으로 홀벌이 수당, 가정주부 수당, 자녀 양육 수당 등을 포함한 5가지 수당을 대체하는 수당으로 가족 보조금을 마련하였다. 1984년 12월에 새롭게 중요한 두 가지 개혁이 이루어졌다. 하나는 기존의 고아 수당을 자녀 부양비 수당으로 변경하여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신 수당, 출산 수당, 가족 보조금을 영아 수당으로 대체해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수당 체계의 단순화였다. 이와 더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부모 교육 수당(allocation parentale d'éducation)과 보육사에 대한 수당(allocation de garde d'enfant à domicile)을 마련하였다.

1997년 리오넬 조스팽 정권은 당시 보편적으로 지원하던 가족수당을 자산조사에 기반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결정은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수당을 지급한다는 가족수당의 수평적 재분배 목적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비판하에 이 결정은 1998년에 철폐되었다.

2001년 자녀 간호 수당(l'allocation de présence parentale)이 마련되어 심한 질병이 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직업 활동을 멈추는 것이 가능해졌다.<sup>5)</sup> 초기에 이 수당은 4개월 동안 12회 지급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3년 기

5) 자녀 간호 수당은 이후에 명칭이 L'allocation journalière de présence parentale로 바뀌었다.

간에 310일 동안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02년도에 마련된 아버지 휴가(*le congé de paternité*)는 출산이나 입양 시 아버지들이 최대 11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쌍생아 출생 시에는 총 18일 휴가). 제도를 시행한 첫해에는 약 60%의 아버지가 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월 1일에 취업 여성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영아 보육 지원 정책으로서 영아 양육 수당(*Paje: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이 마련되었다. 이 수당은 그때까지 영아 보육을 지원하던 영아 수당(*APJE: l'allocation pour jeune enfant*), 입양 수당(*l'allocation d'adoption*), 부모 교육 수당(*APE: l'allocation parentale d'éducation*), 가정에서 돌보는 자녀를 위한 수당(*AGED: l'allocation de garde d'un enfant à domicile*), 인증받은 보육사를 고용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AFFAMA: l'aide à la famille pour l'emploi d'une assistante agréée*) 등 다섯 가지 수당 정책을 대체하는 것이었다. 영아 양육 수당은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는 수당과 영아 자녀 보육을 지원하는 두 가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는 수당은 출산·입양 장려금과 기초수당이다. 영아 자녀 보육을 위한 수당은 직업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Cica: 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과 자녀 양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Cmg: 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직업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은 부부간에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을 더 많이 공유하게 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자녀 교육을 분담하는 것에 대한 수당(*PreParE: La prestation partagée d'éducation de l'enfant*)'이라는 명칭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다. 직업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은 첫째아 출생 시 휴직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이 모성 혹은 부성 휴가가 끝난 직후 6개월간이었으나, PreParE에서는 첫째 자녀 연령이 1세가 될 때까지 부부 각각이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게 하여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확대되었다.

넷째,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가족수당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이슈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 가족정책이 기초로 삼는 것은 가족수당이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모두 같은 액수의 가족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수평적 재분배를 위한 논리는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논리와 결합되어 지속되었다. 그러나 소득이 높은 다자녀 가정에게 가족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이후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최근 유럽 경제의 불황이 심화되고 가족수당 금고의 적자 문제가 지속되자 더욱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프랑스 가족수당의 보편적인 특성은 2015년 사회보장재정법의 변경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 가족수당의 개혁이 강조하는 것은 모든 가족이 가족수당을 받을 자격은 있지만 받는 수당의 액수는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수당제도의 개혁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수당액은 월 순소득이 6,000유로가 넘는 가족에게는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며, 월 순소득이 8,000유로가 넘는 가족에게는 4분의 1로 감소하였다.<sup>6)</sup> 가족수당 개혁이 지향하는 명목적인 목적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사회보장의 가족 분야 재정이 적자에 직면함에 따라 공공지출을 절감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4. 프랑스 가족수당의 현황

프랑스 가족수당공단이 지원하는 수당은 가족수당, 가족 보조금, 영아 양육 수당, 장애 아동 교육 수당, 가족 지원 수당, 개학 수당, 자녀 간호 수당 등 7가지로 분류된다.<sup>7)</sup> 이밖에도 활동 연대 수당, 성인 장애 수당, 주거 수당 등과 같이 반드시 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자녀 양육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 프랑스 법무 행정 정보국(DILA)은 가족수당에 대한 폭넓은 정의를 적용해 이 수당들도 가족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본 절에서는 DILA의 정의에 따라 프랑스 가족수당공단이 지원하는 7가지 수당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다.<sup>8)</sup>

첫째, 가족수당은 20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족에게 가족의 상황이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하지만 급여액은 양육하는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자녀가 14세 이상이 되면 기본 가족수당에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둘째, 3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족은 가족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현재 소득 수준과 맞벌이·홀벌이·한부모 여부에 따라 지

6) DILA(2016). 위의 글.

7) DILA(2016). 앞의 글.

8) 프랑스 가족수당전국공단(2017). “2017년도 가족수당 가이드(Guide des Prestations de la Caf)”. <http://www.caf.fr/>에서 2016. 8. 9. 인출.

급하는 보조금은 월 236.71유로 혹은 월 1만 6,903유로가 된다.

셋째, 영아 양육 수당은 출산·입양 장려금, 기초 수당, 자녀 보육 대체 보조금, 부모 휴직 수당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출산·입양 장려금은 출산 혹은 입양으로 자녀를 갖게 되었을 때 지급되는 일시불 수당이다. 이 장려금은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가족에게만 지급되며 소득 기준은 양육하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 기초 수당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족이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20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할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3세 미만 자녀의 경우 3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 매달 지급되며, 20세 이하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20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 매달 지급된다. 자녀 보육 대체 보조금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보육사(assistante maternelle)를 고용할 때 지원받는 수당이다. 급여액은 양육하는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최소한 전체 보육사 이용 비용의 15%는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끝으로 부모 휴직 수당은 출산 혹은 자녀 입양으로 일을 쉬거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이다. 출산에 따른 수당은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입양에 따른 수당은 자녀가 20세 될 때까지만 지급된다. 급여 지급 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

넷째, 자녀 간호 수당은 20세 미만의 자녀가 질병 혹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사고를 당하여 부모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업 활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요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 역시 자녀 간호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실업 급여는 중단된다. 사회보험 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는 자녀 간호 수당을 받을 수 없다. 급여는 자녀돌봄휴가에 해당되는(1개월당 최대 22일) 기간에 맞추어 월 단위로 지급된다. 부모는 이 급여를 6개월 단위로 갱신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 동안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장애 아동 교육 수당은 20세 미만 자녀의 장애율이 적어도 80%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장애율이 50~79%인 경우라도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집에서 특수교육을 받는다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인 급여액은 월 130.51유로이다. 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 장애 자녀를 돌보기 위해 제3자를 고용한 경우 자녀 장애의 심각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월 97.88~1107.49유로로 다



양하다.

여섯째, 가족 지원 수당은 부모 중 한 사람이 혼자서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20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해 양육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끝으로 개학 수당은 6~18세 미만의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수당은 1년에 1회 학교가 개학하기 전인 8월 말에 지급된다.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급여액이 늘어난다. 자녀 연령이 6~10세이면 월 364.09유로, 11~14세이면 384.17유로, 15~18세이면 397.49유로가 지급된다.

## 5. 결론

본고는 프랑스 가족수당이 가족정책의 목적과 그것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갖는 정의를 기술하고,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기까지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살펴보았다. 보편적 형태의 아동수당을 2018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우리나라에게 프랑스의 가족수당제도가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가족이며,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정책이다. 역사적인 발달 과정에서 가족수당의 모습은 변해왔지만 국가가 가족을 지원한다는 지향성은 변화된 적 없다.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제도는 그 초점을 아동에게 두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국가가 아동을 지원한다는 지향성을 갖고 아동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가족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수당에는 현금 수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육아 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급여와 아이 돌봄 지원에 해당하는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부모와 저소득층 등 취약가정을 지원하는 정책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면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을 가족수당이라는 하나의 체계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가족을 지원할 수 있고 중복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각 부처별로 아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부처별 고유의 목적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아동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아동 관련 정책을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체계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프랑스의 가족수당제도가 당시에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추진되었듯이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도 아동 관련 현안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아동 학대 문제를 포함하여 초저출산 문제를 포함한 인구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이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아동이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대부분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머물러 있는 동안 지급된다. 아동의 정의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감면한다는 차원에서 아동이 부양가족으로 남아 있을 때까지는 아동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 내에서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에 따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 부담도 다를 것이므로 부양 자녀 수를 고려한 급여액의 차등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을 천명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게 된 것은 진정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아동수당의 도입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아동의 양육과 권리 향상에 힘쓰고 아동을 포함한 온 가족이 행복한 곳을 만들길 바라면서 본고를 마감한다.